

신탁계약 변경 대비표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다올KTB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변경 후: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2. 변경시행 예정일: 2023년 6월 12일
- 3. 주요 변경사항:
 - 펀드명칭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 4. 상세 변경사항:

정정사유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칭 변경	펀드명칭: 다올KTB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명칭: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명칭 변경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다올KTB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3.06.12 시행)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채권"이라 한다) 1-2.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채권"이라 한다) 1-2. 신용등급(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

	<p><u>“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인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하며, 이 경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채권이 이 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u></p> <p><이하 생략></p>	<p><u>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BBB+ 이하[전자증권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이라 한다)</u></p> <p><이하 현행과 같음></p>
<p>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3.06.12 시행)</p>	<p>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채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u>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u></p>	<p>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채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u><단서 삭제></u></p>
<p>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p>	<p><u><본조 신설></u></p>	<p>제18조의2(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p>

령 개정사항 반영		
<p>(23.06.12 시행)</p>		<p>①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2.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채권의 신용등급은 해당 채권이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이 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후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그 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한다.</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은 고위험고수익채권과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하며, 매 분기 종료일에 산정한다.</p> <p>④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날의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위험고수익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45% 미만인 경우: 45% 2. 제1호의 채권을 포함한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60% <p>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만기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p>

		<p>의 기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분기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일보유비율을 합산하여 그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해당 분기의 평균보유비율로 한다.</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21.10.21 시행)</p>	<p>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파생결합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p>	<p>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파생결합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p>

	<p>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u></p> <p><이하 생략></p>	<p>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현행과 같음></p>
<p>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3.06.12 시행)</p>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월간 2. 이 투자신탁의 만기일 이전 3월간 3. 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일일보유비율 또는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이를 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으로 본다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삭제></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1.10.21 시행)</p>	<p>제30조(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u>대차대조표상</u>에 계상된 이 투자신탁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p>	<p>제30조(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u>재무상태표상</u>에 계상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p>

	<p>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③<생략></p>	<p>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21.10.21 시행)</p>	<p>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대차대조표</u> 2. <u>손익계산서</u> 3. <u>자산운용보고서</u> <p>②<생략></p>	<p>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재무상태표</u> 2. <u>손익계산서</u> 3. <u>자산운용보고서</u> <p>②<현행과 같음></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21.10.21 시행)</p>	<p>제39조(보수) ①<생략></p> <p>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를 매일 <u>대차대조표상</u>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p>③<생략></p>	<p>제39조(보수) ①<현행과 같음></p> <p>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를 매일 <u>재무상태표상</u>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p>③<현행과 같음></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22.08.30 시행)</p>	<p>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p>	<p>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p>

	<p>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p>②~③<생략></p>	<p>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u>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u>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p>②~③<현행과 같음></p>
<p>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시행)</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생략></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p><이하 생략></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현행과 같음></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 <p><현행과 같음></p>